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년 10월 2일

나. 제출자: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2025년 10월 2일

라. 상정일자: 2025년 10월 16일

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보류
2025년 11월 26일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행정안전국장 김 팔 근

나. 제안이유

-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생복지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복지점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지원,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추가
 -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 내용 삭제 및
그 외 사항 정비
-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1조)
- 전산관리시스템, 업무의 위탁 및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4조)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영 훈

○ 본 조례안은

-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생복지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장기근속자 대상 국내외여행 등 연수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복지사업추진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후생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이번에 새롭게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음. 그러나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민감성을 고려할 때,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필요함. 또한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수정가결